



서울시 7급 추가선발시험 지방자치론

1. 출제영역분석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3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3	지방자치의 재정	4
지방자치의 운영	7	정부 간 관계	3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8	기출변형 문제	2	신유형 문제	—
-------	----	---------	---	--------	---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맞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5	1	2				12

01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ㄱ.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ㄴ. 지방자치단체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ㄴ)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ㄹ.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제소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ㄱ, ㄴ [O]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ㄷ, ㄹ [X]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제4항

동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ㄴ)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라이트(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등권위형(coordinate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한으로 침해될 수 없는 형태이다.
- ② 내포권위형(inclusive model)은 주정부가 연방정부 아래 놓여 있는 상황으로, 권한의 범위도 연방정부가 가장 넓고 다음이 주정부, 지방정부순인 형태이다.
- ③ 중첩권위형(overlapping model)은 연방·주·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분산되어 있으며, 세 정부는 많은 부분에 있어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다.
- ④ 라이트(Wright)는 중첩권위형 모델이 미국 연방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해설】 ① [×] 동등권위형(coordinate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으로 주정부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리로서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 함부로 축소되거나 침해될 수 없다.
- ③ [○] 중첩권위형(overlapping model)은 어느 한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적 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세 정부는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다.

▶ 올바른 지문

- ① 동등권위형(coordinate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정부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한으로 침해될 수 없는 형태이다.

03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권한 중 선결처분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ㄱ.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
- ㄴ.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ㄷ.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 ㄹ.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ㄱ, ㄴ [O]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의 요건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이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ㄷ [X]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재의요구의 조건에 해당한다.

동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ㄹ [X]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는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한다.

동법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04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확정된다.
- ④ 협의회 회장과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해설】 ③ [X]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회의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227, 228 / 부속법령집 p.102

▶ ③

05

재정자주도의 산출 공식에서 분자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 ① 세외수입
- ② 지방교부세
- ③ 조정교부금
- ④ 국고보조금

【해설】 ④ [X]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등을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이다. 이는 재정자주도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재정이 되며 국고보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88

▶ ④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게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시·군 및 자치구의 사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청을 당사자로 한다.
- ④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② [×] 시·군 자치구의 사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② 시·군 및 자치구의 사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
- ③ 현직 법관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위촉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해설】 ① [○]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동법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③ [×] 현직 법관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

동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④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동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②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③ 현직 법관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④ 위촉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없다.

08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형의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 ②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직영기업이 있다.
- ③ 지방공사는 민관합동의 여지가 있다.
- ④ 지방공사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위탁한 기능만을 처리할 수 있다.

【해설】 ④ [X] 지방공사는 지방정부의 위탁과 관계없이 업무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④ 지방공단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위탁한 기능만을 처리할 수 있다.

summary |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전액 출자가 원칙이나 예외적 민간자본 출자 가능
법인격 없음.	독립된 법인격 가짐.	
정부예산(특별회계)으로 운영	정부예산이 아닌 독립채산제로 운영	
직원 : 일반 공무원	임원 : 준공무원(임기 3년) 직원 : 회사원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14~116

▶ ④

09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 중 하나이다.
- ② 통상적으로 부수적인 조건이 붙거나 분담금(matching fund)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③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진다.
- ④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의 종류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③ [X] 교부세의 확대지급은 재정능력은 강화시키나 재정자립도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76~179, 187

▶ ③

10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한다.
- ②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 ③ 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 연도의 세입 중 목적이 특정되어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제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계액으로 한다.
- ④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설】 ④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③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83

▶ ④

11

현행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담금 감면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권
- ②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청권
- ③ 주민소환투표 청구권
- ④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권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2호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38, 141, 146 / 부속법령집 p.18, 25, 26

▶ ①

12 사무배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충성의 원칙 -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의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 ② 효율성의 원칙 - 사무배분에 있어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히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 ③ 현지성의 원칙 - 지역사회에 가깝고 주민의 통제가 용이한 정부에 사무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 ④ 충분재정의 원칙 -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나 재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해설】 ② [×] 효율성(능률성)의 원칙은 사무에 따라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올바른 지문

② 효율성의 원칙 - 사무에 따라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원칙

13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 할 경우 주무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면 이행명령
- ② 대집행
- ③ 재정 불이익 조치
- ④ 정지권

【해설】 ④ [X]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을 게을리 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서면 이행명령, 대집행, 재정 불이익 조치이다. 정지권의 경우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을 위해 사용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summary | 시정명령 VS 직무이행명령

구 분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대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사무
사 유	법령위반 or 부당한 처분 ▶ 자치사무 → only 법령위반	관리 및 집행을 게을리한 때
형 식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이행명령
명령 불이행시	취소·정지	해당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
불복시	자치사무에 한하여 지자체장은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	지자체장은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 ▶ 집행정지결정신청 가능

14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국 초기부터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시행되기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읍(邑)·면(澗)을 기초지방정부로 두고 있었다.
- ②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도는 단층제로 전환되었다.
- ③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지방자치법」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3층제를 이룰 수 있다.
- ④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계층을 법률에 획일적으로 정함에 따라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설】 ③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지방자치법」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 올바른 지문

③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지방자치법」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28, 51, 55, 56 / 부속법령집 p.6

▶ ③

15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1명이다.
- ② 하나의 시·군·자치구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군·자치구의원 정수는 2인 이상 5인 이하이다.
- ③ 시·군·자치구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 ④ 시·군·자치구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한다.

【해설】 ② [×] 하나의 시·군·자치구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군·자치구의원의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다.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 올바른 지문

② 하나의 시·군·자치구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군·자치구의원의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26, 127 / 부속법령집 p.35, 36

▶ ②

| 짝짓기 |

- 16 지방행정계층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묶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ㄱ. 경상북도 문경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ㄴ. 서울특별시 동작구 - 경상북도 울릉군
- ㄷ. 경기도 수원시 - 세종특별자치시
- ㄹ.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해설】 ㄱ [X] 경상북도 문경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이다.
ㄷ [X] 경기도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이다.
ㄹ [X]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자치구이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49~51, 55

▶ ③

| 내용 분류 |

- 17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유급보좌관제 도입
- ② 전문위원의 확대
- ③ 수석행정관제 도입
- ④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해설】 ③ [X] 수석행정관은 강시장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도시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 시정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시장에게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고 그의 정치적 결정을 보좌하는 시정관리관을 말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91

▶ ③

18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원 보충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신규임용	ㄴ. 승진임용	ㄷ. 전직	ㄹ. 전보	ㅁ. 강임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ㅁ

【해설】 ㄱ, ㄴ, ㄷ, ㄹ, ㅁ [O]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19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감사청구인의 연령 제한은 없다.
- ②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③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④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해설】 ① [×] 감사청구인의 연령은 19세 이상의 주민이다.
② [×] 감사청구는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 감사결과는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감사청구인의 연령은 19세 이상의 주민이다.
- ② 감사청구는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④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결과는 공표하여야 한다.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광역시와 도의 부단체장 정수는 2명 이내이다.
- ② 특별시의 부단체장 정수는 3명 이내이다.
- ③ 시, 군,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 ④ 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설】 ① [X] 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부단체장의 정수는 2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구가 800만 명을 넘으면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광역시와 도의 부단체장 정수는 2명 이내이지만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 이내이다.